

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(제7조의2제8항 관련)

1.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

공무원의 종류	적 용 대 상
일반직공무원	6급 이하
외무공무원	4등급 이하
별정직공무원	6급상당 이하
연구직·지도직공무원	연구사·지도사
전문경력관	나군 및 다군
우정직군 공무원	전체

2.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

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(정무직공무원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)